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2019. 7. 19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연종석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7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7월 10일

-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연종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,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- 장애보상 규정을 ‘장애정도’가 확정된 날로 개정(안 제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함) 제11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‘장애등급’이 ‘장애 정도’로 `19. 7. 1.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을 위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6조의2는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원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규칙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,

규 칙	개 정 안
시·도 : 60명 이내	시·읍 : 남성대 50명 이내, 여성대 50명 이내
시·읍 : 60명 이내	면지역 : 혼성대·남성대 30명 이내, 여성대 20명 이내
면 : 50명 이내	전담·전문의용소방대 : 30명 이내
시·읍·면 지역 의용소방대 : 50명 이내	본대 소속 지역대 : 20명 이내
전문의용소방대 : 50명 이내	

현재 13개 시·도에서(부산·인천·대전·경남 제외)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원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.

-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 장애를 입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적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입법예고(`19. 6. 25. ~ `19. 6. 3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북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, 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적법한 장애보상을 위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조례 개정으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정원이 5,260명에서 200여 명이 증가하고 연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, 이에 대한 증원된 정원의 운영 계획과 예산편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정원)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읍지역 : 남성대 50명 이내, 여성대 50명 이내
2. 면지역 : 혼성대·남성대 30명 이내, 여성대 20명 이내
3. 전담·전문의용소방대 : 30명 이내
4. 본대 소속 지역대 : 20명 이내

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장애등급이”를 “장애정도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,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·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"전문의용소방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(이하 "전담의용소방대"라 한다)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 8. 29.>

제11조(정원 등)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8. 29.>

1. 시·도: 60명 이내

2. 시·읍: 60명 이내

3. 면: 50명 이내

4.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: 50명 이내

5. 전문의용소방대: 50명 이내

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(동·리)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8. 29.>

제21조(재해보상)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 2. 장애보상 3. 장제보상 4. 유족보상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]

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.

<개정 2019. 6. 4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9. 6. 4.>

[제목개정 2019. 6. 4.]

[시행일 : 2019. 7. 1.] 제2조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,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의용소방대 정원 증가로 인한 소집수당, 피복비, 자녀학자금 등 비용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2(정원) ①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읍지역 : 남성대 50명 이내, 여성대 50명 이내
2. 면지역 : 혼성대·남성대 30명 이내, 여성대 20명 이내
3. 전담·전문의용소방대 : 30명 이내
4. 본대 소속 지역대 : 20명 이내

-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원 230명 증가('19년 5,260명, '20년 5,490명)

나. 추계의 전제 : '19년 예산 대비 '20년 정원으로 산출

구 분	합계(천원)	소집수당	피복비	자녀 장학금	기타 (경상비 등)	비고 (정원)
2019년	4,339,096	2,345,974	470,700	466,940	1,055,482	5,260
2020년	4,482,669	2,448,540	491,300	487,347	1,055,482	5,490
증가	143,573	102,566	20,600	20,407	0	-

※ '19년 예산 대비 '20년 143,573천원 증가

다. 추계결과 : '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17,865천원 추가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세 출	22,413,345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
소요예산	22,413,345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	4,482,669